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부장관이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표준부동산 공시 가격(안)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경우, 소유자에 맞는 현행화된 주소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소유자 성명·주소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,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료(해당 자료에 포함된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는 제외한다)”를 “자료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해당 자료에 포함된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는 제외한다.

제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표준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. 이 경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위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(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) 및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]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) 법 제4조 전단에서 “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<u>자료(해당 자료에 포함된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는 제외한다)</u> 를 말한다. <단서 신설>	제9조(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해당 자료에 포함된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는 제외한다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<u>표준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</u>	10. <u>표준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. 이 경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위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(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</u>

11. (생략)	<u>주민등록번호) 및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.</u> 11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426